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5.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년 11월 14일

나. 발 의 자 : 운동규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3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운동규 의원)

### 가. 제안이유

- 한부모 가정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 2)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을 명시
- 3)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4)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예방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경제위기와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4,111건, 2012년에는 10,943건으로 조사되어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도 10년간 86명에 이를 정도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발표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운동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
----------	-----

발의연월일 : 2013년 11월 일

발의자 : 운동규의원 외 명

## 1. 제안이유

한부모 가정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을 명시함.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다.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가정복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합의

라. 입법예고(2013. 10. 29 ~ 11. 4) 결과 : 의견 없음

마. 타구제정 : 성북구, 구로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계획 수립)**

-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3. 아동복지시설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